##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1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 백혜련 • 부승찬 • 박지원

이재정 · 김영진 · 민홍철

김태년 • 염태영 • 노종면

김한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 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해 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를 "18세 미만 아동이"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를 "18세 미만 아동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③ <u>18</u>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	<u>세 미만 아동이</u>		
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u>만 14세 미만 아동의</u>	<u>18세 미만 아동의</u>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